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24일,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6.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의원)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방역본부는 같은 법 제9조제6항의 각 호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역본부는 정부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업 발전, 국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8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기관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이에, 축산업 발전 및 국민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방역본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법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8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가 수행하는 법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경비 지원의 대상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방역본부는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①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 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② 축산물의 위생검사, ③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④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⑤ 가축방역사 및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⑥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⑦ 이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수행함.

현행법은 방역본부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으로,

방역본부는 가축방역, 검역, 축산물위생검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 법인이고 국가 위탁사업 외 수익사업이 없어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바,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본부에 대하여 매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비 지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님.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방역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방역본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특히, 기획재정부의 「2024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서도 축산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방역본부의 기관 운영비 및 관리직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참고로, 유사입법례로는 한식진흥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사례가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